의 안 번 호	제	ই
의 결	20 .	
연 월 일	(제	회)

의 결 사 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〇〇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부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농업·농촌 및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적정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관계기관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 목적 범위 내정보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및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부 연계 정보를 정함(안 제20조의2 및 별표1 신설)
- 나. 관계기관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업무 목적 범위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0조4 신설)

라. 근거 법 조항 삭제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안 제22조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별표 1에 따른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각 호 의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관할 전산망과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정보 제공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의 안전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단체의 장 또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제20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2조의2제6항에 따라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 수행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자료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할수 있다.
 - 1.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
 - 2.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신청, 자격확인 및 선정, 집행, 준수사항 조사, 사후관리,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중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 피한 업무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제20조의2제1항 관련)

-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에 관한 정보
- 2. 「상업등기법」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의 등기부에 관한 정보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임야도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관한 정보
-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토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정보
-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시가격정보체계에 관한 정보
-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정보
-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관한 정보
- 10.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 및 같은 법 제121조제5항 에 따른 매출액에 관한 정보
- 11.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국세 납세증명서에 관한 정보
- 12.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의 확인에 관한 정보
- 13. 「지방재정법」 제2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같은 법 제27조의4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같은 법 제27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 1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의 지방보조금관리정보
- 15.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관한 정보
-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정보
-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기간에 관한 정보
-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금 관리정보
- 1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가 포함된 자료
- 20.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2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정보

-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용자의 수용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정보
- 23.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에 관한 정보
- 24.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정보
- 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
- 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관한 정보
- 2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정보
- 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의 어업경영정보 및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교육이수 실적정보
- 2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정보
- 30.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정보
-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주·근로자에 관한 자격정보
- 3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의무,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등,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신고 등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정보
- 33.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배출 등 금지, 방제조치 및 방제조치 이행 명령 에 관한 정보
-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에 관한 정보
- 3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제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원상복 구 등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 등에 관한 정보
- 3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현황에 관한 정보
- 37.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38.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역면제 및 복무에 관한 정보
- 39.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정보
- 4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에 관한 정보

- 4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정보
- 42.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영업자 및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 4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업소 또는 농장에 관한 정보
- 44. 「농약관리법」 제23조의2에 따른 농약의 판매·구매 정보 및 같은 법 제23조의3제1 항 각 호 업무에 관한 정보
- 45. 「비료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비료업자의 비료판매,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 생산업의 등록,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비료사용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비료사용 처방서에 관한 정보
- 46.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 정에 관한 정보
- 47.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
- 48. 「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의 교육훈련사업에 관한 정보
- 49.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정보
- 5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경영체 교육 훈련 및 이수실적에 관한 정보
- 5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 정보
- 5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한 정보
- 5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실 태조사·평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 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에 관한 정보
- 5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및 계약출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출하제한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에 관한 정보
- 55.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 납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경작 및 출하 신고에 관한 정보
- 56. 「농지법」 제31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

- 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자경증명의 발급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지의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정보
- 5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매도사업에 관한 정보
- 58.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른 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 59.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정보
- 6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초지 의 전용 등에 관한 정보
- 61.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
- 6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에 관한 정보
- 6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 및 구입 등에 관한 정보
- 6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농업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의 수령에 관한 정보
- 6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 같은 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보유한 비료 등의 농업자재 판매 및 농약 판매에 관한 정보
- 66.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06조·제111조·제134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및 경제사업 등의 수행에 관한 정보
- 67.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경작신고에 관한 정보
- 6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안 전보험에 관한 정보
- 6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업무 상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지원에 관한 정보
- 7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 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
- 7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의 생산업, 가공업,

- 유통업 신고에 관한 정보
- 7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장 및 통장 임명에 관한 정보
- 73.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신청 등 및 같은 규칙 제20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에 관한 정보
- 74.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정보

비고: 제32호, 제33호, 제34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 및 제49호에 따른 정보의 범위에는 해당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정보를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0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란 별표 1에 따른 정보(「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	
	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	
	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포	
	함한다)를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	
	52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 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 계 기관·단체의 장"이라 한다) 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정보 제 공을 요청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의 장은 관할 전산망과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농	
	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	
	<u> 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u>	
	다)을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u>한다.</u>	
<u><신 설></u>	제20조의3(정보 제공의 결정)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u>	

<신 설>

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 단체의 장이 농업농촌통합정보 시스템의 정보(「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 보를 포함한다) 활용을 요청하 는 경우 같은 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농업농촌통합정보시 스템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할 전산망을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 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 안 전성 확보 조치(「개인정보 보 호법 | 제29조의 안전조치를 말 한다)를 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 단체의 장 또한 개인정보 안 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 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52 조의2제6항에 따라 농업농촌통 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2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 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 의 업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 호의 처리를 말한다)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

- 2. 법 제5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신청, 자격확인 및 선정, 집행, 준수 사항 조사, 사후관리, 중복 231;부정 수급 방지 등에 관한 업무
- 3.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정책을 수립‧시 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중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 피한 업무

- 제22조(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관리 및 감독업무
 -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업무
 - ②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 업정책자금관리단을 말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장				
연 락 치	(044) 201	- 1171		